

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. 5. 11 선고 2022가단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C

피고B

변론 종결2022. 4. 13.

판결 선고2022. 5. 1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체결된 2021. 3. 2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. 9. 27. 접수 제118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① E 주식회사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21219호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이 2012. 3. 29. 'D은 E 주식회사에 22,525,849원 및 그 중 19,500,000원에 대하여 2012. 3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, ②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E 주식회사를 승계한 사실, ③ 망 F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이 2021. 4. 1. 사망하여 그 자녀인 D, C, G, H, 피고가 각 5분의 1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상의 권리·의무를 상속한 사실¹⁾, ④ 망인의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이를 포괄하여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이 법원 2021. 9. 27. 접수 제11828호로 2021. 3. 2.자 협의분할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²⁾,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 나아가 D은 위 행위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,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고양시 덕양구 J건물, K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.³⁾ 결국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지분 및 별지

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에 관하여, D과 사이에 2021. 3. 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. 9. 27. 접수 제1182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남요섭

별지

- 1)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망인이 2006. 12. 26. 1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망인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자녀들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.
- 2) D은 위 2012. 3. 29.자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그 채무액이 60,000,000원을 초과하고 있다.
- 3) 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범위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지분에 관한 취소청구만을 하고 있으므로 취소의 범위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.